



고용노동부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



수신 전국 서택련 택시노동조합연맹 [REDACTED]

(경유)

제목 민원 처리 결과 회신

1. 귀하가 우리 지청에 2022. 2. 10. 단체협약 시정명령 요청 민원 관련입니다.

○ (민원 사항)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2022년 임금협정서 중,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대한 시정 요구

2. 위 민원에 대해 우리 지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'2022년 임금협정서' 체결 당사자에게 '단체협약 시정명령'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불임 시정명령 1부. 끝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



팀장 [REDACTED] 과장 [REDACTED] 전결 2022.8.9.

협조자

시행 [REDACTED] (2022. 8. 9.) 접수

우 072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(양평동1가 115 노동부 남부지청) 근로개선지도1과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[REDACTED] 팩스번호 - / young771018@korea.kr / 비공개(6)

위반 조항	시정사항
<p>제1조(기본 방침)</p> <p>① 항</p> <p>(라) 실 영업시간</p> <p>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을 기준으로 교대제 기준 1일 5시간 15분을 실 영업시간이라고 하며,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(근로시간)①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기본 방침)</p> <p>① 항</p> <p>‘(라) 실 영업시간’ 전체 삭제</p>
<p>③ 운수종사자가 1일 실 영업시간(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15분) 이상을 달성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, 회사는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일체의 초과 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③ 운수종사자가 1일 실 영업시간(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15분) 이상을 달성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, 회사는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일체의 초과 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</p> <p>⇒ ‘위반조항’의 빨간색 문구 삭제</p>
<p>4조(근로시간)</p> <p>②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제16조(승무수당)①항의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해당일의 실 영업시간(택시요금 작동시간)으로 한다.</p>	<p>조항 전체 삭제</p>

<p>7조(성실근로의무 및 불성실 근로제재)</p> <p>① 택시운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5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장밖에서 전부를 근로하여 사실상 회사의 지배,관리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특성과 운송기록시스템으로는 사후적으로 단지 운행하였는지 여부만 파악하는데 불과하고 승객을 태우려는 적극적인 영업의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월 기준금을 정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미달한 경우(택시미터기 작동시간 기준 1일 4시간30분 미만)에는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며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</p>	<p>7조(성실근로의무 및 불성실 근로제재)</p> <p>① 택시운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5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장밖에서 전부를 근로하여 사실상 회사의 지배,관리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특성과 운송기록시스템으로는 사후적으로 단지 운행하였는지 여부만 파악하는데 불과하고 승객을 태우려는 적극적인 영업의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월 기준금을 정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미달한 경우(택시미터기 작동시간 기준 1일 4시간30분 미만)에는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며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</p> <p>⇒ ‘위반조항’의 빨간색 문구 삭제</p>
<p>②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금 이상은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제21조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, 1일 기준으로 정한 실 영업시간(택시미터기 작동시간)을 상회한 날의 개수만큼 제16조에 따른 승무수당을 지급한다.</p>	<p>조항 전체 삭제</p>
<p>③ 주 1회 이상 제1조(기본방침)①항(라)에서 정한 실 영업시간(택시요금미터기 작동시간 5시간 15분)에 미달한 경우 회사는 승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	<p>조항 전체 삭제</p>
<p>④ 운수종사자가 불성실 근로기준에 해당되어 ②항과 ③항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은 완수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.</p>	<p>조항 전체 삭제</p>

<p>⑥ 운수종사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,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므로 책임 납입(월 소정근로 미달시는 승무일수에 비례한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책임 납입)하여야 하며,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때에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한다. 또한 운송수입금의 임의 사용(유용),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 불량, 불성실 영업행위(부당요금징수, 택시요금미터 미사용, 택시요금미터 조작 및 파손, 민원 유발 등) 및 1일 실 영업시간(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15분)미달 등은 1차 경고하고 그 이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⑥ 운수종사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,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므로 책임 납입(월 소정근로 미달시는 승무일수에 비례한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책임 납입)하여야 하며,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때에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한다. 또한 운송수입금의 임의 사용(유용),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 불량, 불성실 영업행위(부당요금징수, 택시요금미터 미사용, 택시요금미터 조작 및 파손, 민원 유발 등) 및 1일 실 영업시간(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15분)미달 등은 1차 경고하고 그 이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.</p> <p>⇒ ‘위반조항’의 빨간색 문구 삭제</p>
<p>11조(정상근무인정) 다음의 경우 각 항 규정은 단위사업장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. 1.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</p>	<p>유급휴일을 사용할 경우 실 근무일수에 따른 월 기준금 산출방법을 명시 바람</p>
<p>16조(승무수당) ① 승무수당은 16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,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실 영업시간(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5시간 15분) 이상인 때에 한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한다.</p>	<p>16조(승무수당) ① 승무수당은 16일 이상 소정근로일에 정상근로한 자에 대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⇒ ‘위반 조항’의 빨간색 문구를 ‘시정사항’의 빨간색 문구로 정정</p>

<p>17조(장려수당)</p> <p>16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장려수당 200,000원을 지급한다.</p>	<p>17조(장려수당)</p> <p>16일 이상 소정근로일에 정상근로한 자에 대하여 장려수당 200,000원을 지급한다.</p> <p>⇒ ‘위반 조항’의 빨간색 문구를 ‘시정사항’의 빨간색 문구로 정정</p>
<p>제20조(성과급 산정)</p> <p>① 월기준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교대 승무자 : 4,450,000원 - 오전 승무자 : 4,164,000원 - 오후 승무자 : 4,736,000원 <p>② 월 기준금 초과시</p> <p>성과급 = 월 기준금 초과금액 × 80%</p> <p>③ 운수종사자가 (도중하차, 승차거부, 부당요금, 합승, 운송수입금유용, 미터기사용, 미터기 조작 및 파손)등 위반으로 1회 이상 처분을 받은 때, 그리고 불친절 등으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때(운수종사자가 처분 받은 경우임)에는 전제②항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0조(성과급 산정)</p> <p>⇒ 시정사항 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조항은 월 기준금(운송수익금)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, 성과급은 성과급여로 정액급여와 같이 차등 지급이 가능한 바, 동 조항 자체는 위반은 아니나, ○ 아래의 조항과 연관되어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익금을 운수종사자가 납부토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, 위법인 바, ○ 제1조제①항, 제1조제③항, 제4조제②항, 제7조제①항 내지 제④항, 제⑥항, 제11조제1호, 제16조제①항, 제17조, 제21조제2호, [별표#1] 내지 [별표#3] 월 임금표준 산정표의 기준급여 산정 예시표 중 ‘상여금 산출근거’가 시정되면 시정으로 간주함
<p>제21조(상여금의 지급 조건)</p> <p>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당월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통사고로 회사에 45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은 자 2.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자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항 전체 삭제</p>

<p>[별표#1] 내지 [별표#3] 월 임금표준 산정표의 기준급여 산정 예시표 중 ‘상여금 산출근거’의 실 승무</p>	<p>[별표#1] 내지 [별표#3] 월 임금표준 산정표의 기준급여 산정 예시표 중 ‘상여금 산출근거’의 소정근로일에 정 상근로한 일수</p> <p>⇒ ‘위반 조항’의 빨간색 문구를 ‘시정사항’의 빨간색 문구로 수정</p>
--	---